

## ‘위덕대학교 학생 인권선언문’

**제1조,**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,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

**제2조,** 학생은 본질적으로 한 인간이며 동시에 한 사회의 구성원이므로 인간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가 있다.

**제3조,** 학생은 나이, 사회적 신분, 출신 민족, 언어, 인종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으며 신체적, 정신적 폭력 및 체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

**제4조,** 학생은 개성을 실현하며, 사생활과 자유와 비밀을 보호받고, 양심·종교의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.

**제5조,** 학생은 인권보호와 소수자의 권리보장 등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상담조사 등을 청구하는 등 보호·구제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**제6조,**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권리와 인생관 또는 가치적·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.

**제7조,**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**제8조,**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
**제9조,**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위덕대학교 인권센터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.

**제10조,** 학생은 학습자로서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에 힘쓰고, 가정, 학교, 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.

위덕대학교 재학생